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0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황 희 · 민홍철 · 추미애
부승찬 · 안태준 · 손명수
이용선 · 한민수 · 이소영
김종민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의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주거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군인의 사기 저하와 임무 수행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의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군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군인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군인 및 그 가족에게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
-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사. 군인 주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하여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아.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그 가족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장교·준사관·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군인 주거지원사업”이란 군인에게 군 숙소, 군 숙소 외에 주택 구입·임차 자금 지원, 주택 특별공급, 군인 주택 건설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주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택임대자금 지원 및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4.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
5.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인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군인 주택 건설 및 공급) ① 국가는 군부대 주둔지 등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군인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인 주택은 군인의 복무 기간,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인 주택 건설·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군인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특별공급의 대상·비율·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주택 특별공급의 횟수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인 주택의 운영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건설된 군인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산정 기준, 입주 및 퇴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인 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수준 및 군인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 구입·임차 자금 지원) ① 국가는 군인 및 그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 구입·임차 자금 지원의 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주거 실태 조사 및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군 주거 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군인 주거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 주거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군인 주거지원사업 관련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5조(국가 지원) 국가는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의 활용)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군사 시설이 아닌 국유재산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재산을 군인 주거지원사업 용도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청과 협의)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